

선박검사 관련 규정 등 제 · 개정 사항 (2003년 4/4분기)

해양수산부 제공

▣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기록부 서식 개정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3-63호, 2003. 10. 4)

- 개정사유
해양오염 방지 협약(MARPOL) 개정 내용 수용
- 주요골자
국제항해 선박에 비치하는 기름기록부 · 유해액체물질기록부 · 해양시설기름기록부 및 기름등폐기물 관리대장 등의 서식변경
- 시행일 : 2003. 10. 4

▣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적용지침 개정(해양수산부예규 제54호 2003. 10. 7)

- 개정사유
총톤수 5톤미만의 어선에 대한 선박검사지침을 정비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· 보완
- 주요골자
 1. 총톤수 5톤미만의 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타와 프로펠러축계의 발출검사는 타베어링의 마모정도 등 각부재의 상태를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함

- 【관련 조항 제7조제1항제4호 신설】
2. 총톤수 5톤미만의 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입거, 상가 또는 거선시기에 대한 연기신청이 있고 선체내부상태 등이 양호한 경우 이에 대한 검사준비를 6월이내의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
- 【관련 조항 제7조제2항제2의3호 신설】
- 시행일 : 2003. 10. 7

▣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개정(해양수산령 제255호, 2003. 10. 15)

- 개정사유
개정된 국제해상위험물규칙(IMDG Code) 수용 및 민원편의 도모
- 주요골자
 1. 고압가스를 수납하는 압력용기 및 집합형압력용기의 정의 신설
【관련 조항 제2조제6의2호, 제6의3호 신설】
 2. 압력용기 및 집합형압력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사용기준 근거 신설
【관련 조항 제6조제5항】
 3. 국제해상위험물규칙(IMDG Code)에 따

- 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 수납용기에 압력용기 및 집합형압력용기 추가
【관련 조항 제205조의2제1항, 별지 제3호도식제4호 및 제5호 신설】
4. 병독을 옮기는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에 대한 표시기준 추가
【관련 조항 별지 제3호도식제1호】
5. 위험물표찰중 정표찰의 표시방법을 변경하고 부표찰 삭제
【관련 조항 별지 제1호도식】

○ 시행일 : 2004. 1. 1

▣ 선박검사사무취급요령 개정(해양수산부 승인, 2003. 10. 21)

○ 개정사유

해양수산부 감사 지적에 따라 선박검사 불합격처리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선박검사신청 취하시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 관리지침 등을 마련·시행함으로써 선박검사 이력 및 민원업무 관리

○ 주요골자

1. 선박검사 신청하여 1회이상 임검후 취하 또는 반려시 선박시설의 부적합 및 검사 준비 미비로 인한 경우로 분류하여 불합격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함
【관련 조항 1.7.1】

2. 불합격선박 등이 재신청할 경우 당해 임검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 검사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함
【관련 조항 1.7.2】

○ 시행일 : 2003. 10. 21

▣ 수산업법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18121호, 2003. 11. 4)

○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

어획물운반업자(漁獲物運搬業者)가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의 범위를 확대하고, 근해어업 등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한편,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이 초래하는 어획물운반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가기준을 신설하고, 과징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○ 시행일 : 2003. 11. 4

▣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개정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3-76호, 2003. 11. 7)

○ 개정사유

국제해상위험물규칙(IMDG Code)의 개정 내용(2004. 1. 1 시행)을 수용한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이 개정됨에 따라, 동 규칙에서 위임된 위험물운송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 개정

○ 주요골자

1. 신설된 압력용기 및 집합형압력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사용기준을 신설하여 위험물 운송중 안전성을 확보도록 함
【관련 조항 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신설, 제22조제4항제8호 및 동조 제6항 신설】

2. 각종 위험물에 대한 비상조치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별표를 개정하여 위험물 관련 사고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
【관련 조항 별표1 및 별표24】

○ 시행일 : 2004. 1. 1